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교통(주)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애가 남은 경우

(91-290호 91. 7. 22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청구인 성명 : 유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2동

원 처 분 청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교통 주식회사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2. 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 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가톨릭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에서 요양치료후 1991. 1. 9.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된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등급 제7급 4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통증과 감각이상이 있

어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6. 4. 유○○)
2. 답변서(1991. 6. 17.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1. 19. 유○○)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2. 1.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4. 8.)
6. 소견서 사본(1991. 3. 7. 노동부 자문의)
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 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성바오로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1. 9. 치료 종결되었는바 성바오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안정상태에서도 현

훈, 좌측 반신 감각이상 증세가 있으며 움직일 경우에는 심해짐. 현재 상태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의 소견인 바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 “뇌혈관 순환장애에 대한 치료후 좌반신에 감각이상 및 극심한 동통 등의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 “현재 상태로는 뇌혈관 순환장애에 의한 후유증으로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 판단컨데 청구인의 경우 현훈과 좌반신 감각이상 및 극심한 동통등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인정하므로 원처분청의 장해등급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 ○○운수(주)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신경 장해가 남은 경우

(91-513호 91. 10.28.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채 ○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원 처 분 청 :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운수 주식회사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1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2.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한손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 후 1991. 5. 16.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장해등급 제7급 4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현저한 노동력 감퇴로 노동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운전면허도 장해로 취소된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7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9. 13. 채○○)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9.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5. 20. 채○○)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6. 1.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8. 10.)
6. 장해진단서 사본(1991. 7. 2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7. 장해심사 결과 통보사본(1991. 7. 26.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8.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통지서 사본(1991. 6. 25. 서울특별시장)
9.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91. 7. 13.)
10.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운주(주)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한동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5. 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한동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좌측상지 운동장애: 손으로 물건을 잡을수 없음, 좌측하지 운동장애: 보행시 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함, 언어장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들을 때 무슨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임”이고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제출한 1991. 7. 12. 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국민연금장애 진단서상의 소견은 “좌측 부전마비로 보행이 가능하기는하나 운동력 감소로 절고 보폭도 적으며 상지는 운동력 감소로 어떤 물건을 잡기 힘듬. 언어장애 소견도 있으며 말을 하기는 하나 주의집중을 해서 들어야 이해가 가능할 정도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됨”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상지 특히 수지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좌하지 역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언어장애가 인정됨. 현재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애 뇌실질내출혈 후유증상으로 신경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일지라도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수지 기능, 언어장애가 있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7급 4호 적용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